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차장 및 하수도 문제해결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1. 경 과

- 가. 제 출 자 : 민사윤
- 나. 소개의원 : 김동욱 의원
- 다. 청원번호 : 제77호
- 라. 제출일자 : 2017.11.06.
- 마. 회부일자 : 2017.11.08.

2. 청원요지

- 서울시 지정보호수 1호와 연산군묘 등이 있는 도봉구의 문화관광 명소에 주차공간이 없어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에 무단주차로 주차분쟁이 끊이지 않으며 또한 비만 오면 하수도가 역류하여 안전사고발생 및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바 이에 관광명소로 인한 편의시설 주차장 및 하수구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함.

3. 주요내용

- 연산군 묘 근처 하수도 역류 문제 해결 요청 건

4. 청원소개의견 요지(소개의원: 김동욱 의원)

- 서울시 지정보호수 1호와 연산군묘 등이 있는 도봉구의 문화관광 명소에 주차공간이 없어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에 무단주차가 심각하여 주차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또한, 도로포장이 파인 곳이 많아 비만 오면 하수도가 역류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바 이에 관광명소로 인한 편의시설 주차장 및 하수구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임.

5. 검토의견

- 본 청원은 서울연산군묘 부근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무단주차 문제 해소와 하수도 역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청원번호를 달리하여 교통위원회(청원 제76호)와 우리 위원회(청원 제77호)로 회부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소관사항인 하수도 역류 문제 해소 요청의 건만 심사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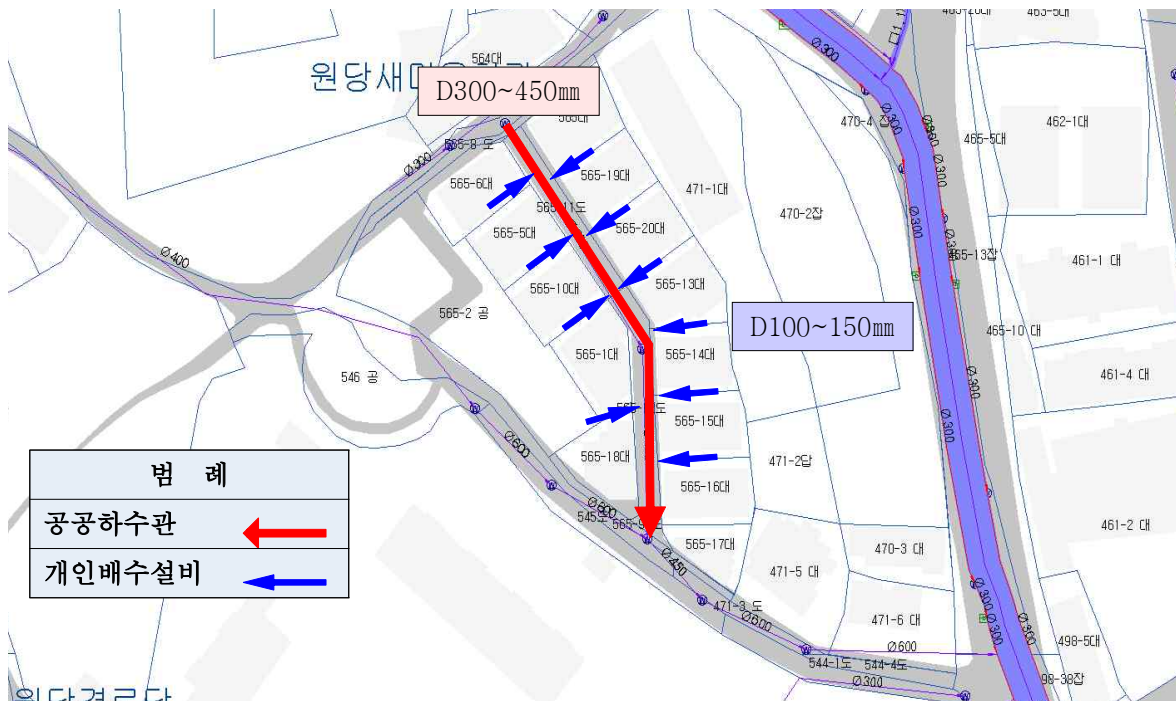


<그림 1> 도봉구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위치도

- 신학빌라는 북한산 둘레길 19구간 왕실묘역길(정의공주~우이령길 입구)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인접해서는 연산군묘와 은행나무 보호수 1호로 지정된 800년 된 은행나무, 원당샘공원

이 위치하고 있음

- 청원인은 최근 이곳 연산군묘를 찾는 시민들과 들레길을 걷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난과 매년 여름 장마철이 되면 하수와 화장실 변기를 통한 역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는 해당지역 점검결과 하수관이 노후되긴 하였으나 배수는 양호한 상태라며, 해당지역 하수도 문제는 단지 내 개인배수설비¹⁾ 즉, 공공하수도로 유입키 위해 개인이 설치한 배수설비의 불량으로 우기시 지하층 일부세대 역류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평상시는 원활히 배수되고 있다는 의견임.



<그림 2> 신학빌라 공공하수관 및 개인배수설비 현황도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해당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유지·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음

- 더불어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인 도봉구²⁾는 2017.10월 청원인 면담 시 지하세대 역류예방을 위해 역지변 등의 시설이 필요한 세대는 신청토록 안내³⁾하였고, 추후 접수된 세대에 대해서는 역류예방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 함.
- 그러나 청원인에 따르면 평상시의 문제가 아닌 장마철이나 집중호우시의 하수역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도봉구청의 주장과 같이 개인배수설비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 또한, 역지변 설치는 응급조치로 근본적인 대안이라 보기 어려운 바,
- 서울시와 도봉구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평상시와 장마철로 구분하여 신학빌라 개인배수설비의 우수흐름 및 용량, 그리고 이와 연결된 공공하수도의 우수흐름 및 용량의 적정성 등을 보다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해 역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그 근본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여겨짐.

2) 해당 공공하수관로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하수관로 내경이 300~450mm임으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치구가 비용을 부담해야함.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장이 부담하는 비용

가. ~ 다. 생략

라. 내경 900mm 이상 또는 통수단면적 0.7㎡ 이상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비

마. ~ 바. 생략

2. 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

가. 내경 900mm 미만 또는 통수 단면적 0.7㎡ 미만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나. ~ 라. 생략

3) 일부세대는 기설치 되어 있는 상황임.